



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7. 11. .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올림픽 기간 주요 시가지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는다 함.

□ 관련근거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

□ 주요내용

1. 목적
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내 대회장 접근도로 및 주요 시가지의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방문객 및 외국인에게 깨끗한 도시 청결한 평창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.

2. 민간위탁 개요

- 위 탁 기 간 : 2018. 2월 ~ 3월
- 위탁 대상자 :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
- 위탁사무
 -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 3대임차(5톤압롤)
 - 대회장 접근도로 및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(100명/일)

관 련 법 규

3. 위탁현황

- 올림픽기간 주요 시가지 청소 및 청소차량 입차
- 대관령, 진부, 봉평 시가지 일대 청소

4.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균의회 동의안 심의 : 2017. 12월
- 위탁업체 선정 : 2017. 12월 ~ 2018. 1월
- 민간위탁 계약 및 공증 : 2018. 1월
- 위탁운영 : 2018. 2월 ~ 2018. 3월(2개월간)

□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- 폐기물 관리법
- 폐기물 관리조례

○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 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하거나 위탁 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 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폐기물 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 처리 등)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②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○ 폐기물 관리조례

제6조(생활폐기물 처리)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폐기물처리업자"라 한다)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